

[별표 6]

식품이력추적관리정보 또는 수입식품등의 유통이력추적관리정보
연계에 관한 사항(제8조 관련)

1. 등록자는 「식품위생법 시행규칙」 제74조의4, 「축산물 위생관리법 시행규칙」 제51조의11, 「건강기능식품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29조의2제6항 또는 「수입식품안전관리 특별법 시행규칙」 제41조제1항에 따라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이 구축한 식품이력추적관리시스템(수입식품등인 경우 유통이력추적관리에 관한 종합정보시스템을 말한다. 이하 같다)에 다음의 정보사항을 연계하여야 한다. 다만, 생산제품을 국외로 수출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가. 식품제조·가공업, 축산물가공업 또는 건강기능식품제조업의 경우

1) 제조·가공(생산)의 정보

가) 식품이력추적관리번호

나) 제조·가공업소 명칭 및 소재지

다) 제조일자

라) 소비기한 또는 품질유지기한

마) 제품 원재료 관련 정보

- 원재료명 또는 성분명, 원산지(국가명), 원재료의 공급자 및 주소, 유전자변형식품여부(단, 원산지 및 유전자변형식품여부는 표시대상 품목에 한함)

바) 기능성 내용(건강기능식품에 한함)

사) 생산량(제품의 최소판매단위별 개수)

아) 상품바코드(바코드가 있는 제품에 한함)

자) 그 밖에 제품과 관련하여 제조·가공업소가 공개하고자 하는 정보
(단, 관련 법령에 위반되는 내용은 제외)

2) 공장출고단계의 정보

가) 식품이력추적관리번호

나) 제조·가공업소 명칭 및 소재지

다) 출고일자

라) 거래처 또는 도착장소 명칭, 소재지, 연락처

마) 출고량(제품의 최소판매단위별 개수)

3) 지점, 대리점 등의 정보(등록자가 관리 가능한 경우)

가) 식품이력추적관리번호

나) 지점·대리점·판매업소 등의 명칭, 소재지

다) 입고일자

라) 입고량(제품의 최소판매단위별 개수)

마) 출고일자

바) 출고량(제품의 최소판매단위별 개수)

나. 기타 식품판매업의 경우(「식품위생법 시행규칙」 제69조의2 제1호부터 제2호에 해당하는 식품, 「축산물 위생관리법 시행규칙」 제51조의5제1항 및 「수입식품안전관리 특별법 시행규칙」 제35조 제2항에 따른 식품(건강기능식품 제외)에 한함)

1) 식품이력추적관리번호

2) 제품명

3) 판매업소 명칭 및 소재지

4) 입고일자

5) 입고량(제품의 최소판매단위별 개수)

6) 재고기준일자

7) 재고량(제품의 최소판매단위별 개수)

8) 식품이력추적관리번호별 재고량(식품사고 발생 시)

다. 수입식품등 수입·판매업(자사제품 제조용원료는 제외한다.)

1) 수입식품등의 유통이력추적관리번호

2) 수입업소 명칭 및 소재지

3) 제조국

4) 제조회사 명칭 및 소재지

5) 유전자변형식품표시

- 6) 제조일자
- 7) 소비기한 또는 품질유지기한
- 8) 원재료명 또는 성분명
- 9) 기능성 내용(건강기능식품에 한함)
- 10) 수입량(제품의 최소판매단위별 개수)
- 11) 제품명
- 12) 수입일자
- 13) 출고일자
- 14) 출고량
- 15) 거래처 또는 도착장소
- 16) 상품바코드(바코드가 있는 제품에 한함)
- 17) 그 밖에 제품과 관련하여 수입업소가 등록하고자 하는 정보
(단, 관련 법령에 위반되는 내용은 제외)

라. 건강기능식품유통전문판매업

- 1) 식품이력추적관리번호
- 2) 제품명
- 3) 유통전문판매업소의 명칭 및 소재지
- 4) 입고일자
- 5) 입고량(제품의 최소판매단위별 개수)
- 6) 출고일자
- 7) 거래처 또는 도착장소 명칭, 소재지, 연락처
- 8) 출고량(제품의 최소판매단위별 개수)
- 9) 식품이력추적관리번호별 재고량(식품사고 발생 시)

2. 등록자는 식품이력추적관리 또는 수입식품등의 유통이력추적관리 등록제품의 보관 및 유통·판매단계에서 회수사유가 발생한 경우 즉시 식품이력추적관리시스템에 회수대상, 회수사유 및 회수결과에 대한 정보사항을 연계하여야 한다.